

창원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나1119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나111968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가단12152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형률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이상훈

변론 종결 2024. 8. 23.

판결 선고 2024. 10. 25.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가단121523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21. 12. 30. 접수 제1709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사해행위일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21. 12. 30.로 보아야 하고 2021. 12. 30.경에는 이미 원고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등 참조).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일자는 "2021. 2. 26.자 설정계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2021. 2. 26.을 사해행위일로 보아야 하고, A과 피고가 2021. 2. 26.경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작성하고 그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마치지 않다가 2021. 12. 30.경 위 계약서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2021. 12. 30.경 A과 피고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 무렵 사해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이진석

판사김상욱

별지